

##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# 1.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, 법인·단체 및 공공기관을 추가 (안 제3조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지역 특화산업 분야 수출 중소·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무역보험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기금 재원을 다양화하고, 이를 위해 기금 출연기관에 지방자치단체, 법인·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 확대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무역보험기금 출연기관에 지방자치단체, 법인·단체 및 공공기관을 추가 (안 제3조)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무역보험기금 출연재원을 다양화하여 안정적인 무역금융을 공급함으로써 지역별 수출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